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화 학 물 질 의 등 록 및 평 가 등 에  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21132호, 2025. 11. 11. 공포, 2026. 5. 12. 시행)으로 신설·정비된 제도(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·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)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접수·승인 및 사실조사 등 집행 업무의 위임·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,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범위 등 명확화(안 제21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, 제2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)
-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·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 업무를 추가함
- 나.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(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)
-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함

다. 분쟁조정 및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승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·위탁체계 정비(안 제31조제2항제6호의2 신설, 제5항제5호의2 신설 및 제15호 개정, 제6항제1호 개정, 제6항제7항 및 제8항 신설)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의2”를 “법 제16조의5”로 한다.  
제21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·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한 업무

2의3.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신청 등에 관한 업무

제2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“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”를 “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및 업무승계”로 한다.

4의2.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·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

4의3.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

제29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

제31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신청 접수·승인에 관한 업무

제31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5호 중 “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”를 “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및 업무승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“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”를 “법 제42조의2제7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·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

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(이하 “한국환경보전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1.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·지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연구·검토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
2. 제29조의2제7호에 따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지원

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1. 한국환경공단
2. 한국환경보전원
3.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
별표 6 제2호 위반행위란 아목 중 “법 제45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45조의2 제3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

의 처리 업무) 법 제39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- 1. 삭제
2. ~ 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 5. ~ 10. (생략)
11.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

제29조의2(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)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~ 6. (생략)

<신설>

제3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

의 처리 업무) -----
-----
-----
----.
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·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

- 4의3.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

- 5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-----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및 업무승계-----

제29조의2(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) -----
-----
-----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

제3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7. ~ 18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한국환경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6. ~ 14. (생략)

15.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

16. (생략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신청 접수·승인에 관한 업무

7. ~ 18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·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

6. ~ 14. (현행과 같음)

15. -----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및 업무승계 -----

16. (현행과 같음)

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.

1.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

1의2. (생략)

2.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이행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업무

3. 삭제

4. (생략)

<신설>

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법 제42조의2제7호-----  
-----  
-----

1의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4. (현행과 같음)

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(이하 “한국환경보전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1.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·지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연구·검토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

2. 제29조의2제7호에 따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저감에 관한 활동 지원

<신 설>

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1. 한국환경공단

2. 한국환경보전원

3.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